

의안번호	2126535
의 퇴 인	김은희의원
회 답 일	2024. 3. 5.
추계번호	24C0180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2차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,000만원(연평균 1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성폭력 2차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(안 제3조의2)	80	-	-	-	-	80	1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의2(2차피해방지)	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성폭력 2차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3조의2(2차 피해방지)	○	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성폭력 2차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(안 제3조의2)

- 안 제3조의2에 따라 성폭력 2차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 소요 발생 예상
 - 성폭력 2차피해방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되,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개정안 시행 첫 해인 2025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성폭력 2차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8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여성가족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4년도에 8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2] 성폭력 2차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성폭력 2차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(안 제3조의2)	80	-	-	-	-	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